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19가단109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필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규태, 김현영

변 론 종 결 2021. 6. 29.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F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F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455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5. 10. 접수 제24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 2. 12. 접수 제72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 2. 12. 접수 제7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F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은 42,965,0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42,965,07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5. 10. 접수 제24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 2. 12. 접수 제72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 2. 12. 접수 제7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이 운영하는 G회사 소속 용접공이었던 원고는 2016. 5. 6. 10:2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G회사 작업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슬링바로 묶어 작업장 안에 설치된 천정 크레인으로 연결한 후 리모컨을 이용하여 철구조물을 들어 올리던 중 철구조물이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380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2. 26.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30,45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14. 확정되었다.

다. F은 1990. 5. 1.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는데, 2018. 5. 18. 피고 B와 협의이혼하였다.

라. 한편 F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이던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7.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455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후 피고 B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5. 10. 접수 제243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또 피고 B는 자신의 남동생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D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 2. 12. 접수 제72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또 피고 B는 자신의 친구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E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 2. 12. 접수 제72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2호증, 을 6호증 내지 을 7호증의의 2, 을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F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산 사상구 H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F 명의의 부산 사상구 H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과 위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위 H 토지와 공장 건물 및 위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만이 가능하고,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85,000,000원에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있던 90,676,148원을 공제하면 94,323,852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0,456,89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2,508,187원의 합계 42,965,077원이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42,965,0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2,965,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지도 않았으며,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받은 것이고,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이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16. 5. 6. 발생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은 2016. 7. 11.이므로, 원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F의 무자력 여부

(1) 부산 사상구 H 대 484.2㎡ 및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련의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F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산 사상구 H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F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부산 사상구 H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의 처분행위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2020. 3.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6. 6. 8. J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H 대 484.2㎡와 지상 공장 건물(이하 위 H 토지와 지상 공장을 ‘이 사건 H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F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H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727,000,000원이었던 사실, J는 2016. 7. 11. 매매계약의 잔금 중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잔금 374,770,542원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F은 이 사건 H 부동산에 관하여 J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454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H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H 부동산에 대한 2016. 7.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2017. 7. 11. 같은 날 접수되었으나, 그 접수번호 순서대로 이 사건 H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주식회사 I 명의의 이 사건 H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H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사이에 한 달 가량의 간격이 있는 점, 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점, 이 사건 H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같은 날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H 부동산의 매수인인 J와 채무자인 F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증여계약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H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자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먼저 이 사건 H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H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한 달 가량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H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접수번호보다 앞서는 점, F은 이 사건 H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H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H 부동산은 제3자인 J의 소유로 되었고, 위 H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F의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H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3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을 11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2020. 10. 5.자 및 2021. 5. 6.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의 적극재산은 시가 17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J로부터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매매잔금 374,770,542원1), I은행 신탁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잔액 1,128,095원, I은행 개인연금신탁 계좌 중 (계좌번호 3 생략)의 잔액 9,867,949원, (계좌번호 4 생략)의 잔액 12,899,641원 등 합계 569,666,227원(=171,000,000원+374,770,542원+1,128,095원+9,867,949원+12,899,641원)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 30,736,425원[=30,456,890원+279,535원{=30,456,890원×67일(2016. 5. 6.부터 2016. 7. 11.까지)/356일×0.05, 원 미만 버림}]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등 합계 130,736,425원(=30,736,425원+10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398,666,227원(=374,770,542원+1,128,095원+9,867,949원+12,899,641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130,736,425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이 사건 H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2016. 8. 10.경까지 이를 자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합계 345,201,51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F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F이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2016. 8. 10.경까지 제3자에게 합계 345,201,517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345,201,517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은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바로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그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 C, D, E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달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아파트 M동

[도로명주소] 부산 사상구 N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사상구 K 대 13981.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O호 철근콘크리트조 59.9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39816000분의 232600. 끝.

1) 이 사건 H 부동산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어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뿐이므로, 이 사건 H 부동산의 변형물인 매매잔금은 적극재산에 포함된다(이 사건 H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경우 이 사건 H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되고, 이 사건 H 부동산의 변형물인 매매잔금 또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다).